#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선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147 발의연월일: 2020. 8. 21.

발 의 자: 강선우·김경만·황운하

안규백 • 이해식 • 서영석

권칠승 · 김영호 · 박성준

서영교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제5조의2에 따르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을 규정하고 있음.

해당 조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식품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행사를 개최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에 기념행사 이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및 관련 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음.

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과 관련하여 기념행사와 더불어 식품안전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하고,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 관련 사업 및 활동이 보다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(안 제5조의2).

법률 제 호

##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제1항 중 "높이기"를 "높이고 사업자의 식품안전 인식 제고와역량 향상을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할 수 있다"를 "할 수 있고,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(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 제5조의2(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 안전주간) ① 식품안전에 대한 안전주간) ① -----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높이고 위하여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 사업자의 식품안전 인식 제고와 전의 날로 하며, 매년 5월 7일부 역량 향상을 -----터 5월 21일까지를 식품안전주 간으로 한다.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 품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. -----할 수 있고, 관 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단 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